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5. 21 선고 2021가단36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연증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지환, 허순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세훈

변론 종결2024. 4. 30.

판결 선고2024. 5. 2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울산 중구 D 대 254.6m²에 관하여 2019. 6. 7. 체결된 증여계약을 292,117,646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92,117,6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4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

피고와 C 사이에 울산 중구 D 대 254.6m²에 관하여 2019. 6. 7. 체결된 증여계약을 474,961,235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74,961,2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

피고와 C 사이에 울산 중구 D 대 254.6m²에 관하여 2019. 6. 7. 체결된 증여계약을 351,292,266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51,292,2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발생

1) 원고는 2017. 11. 28. E 주식회사(이하 'E'라고만 한다)로부터 경주시 F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진입도로공사를 공사대금 1,100,000,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도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E의 대표이사인 C는 위 도급계약에 보증을 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기성금에 대한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.

2) 원고는 2018. 6. 11.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2018. 6. 15. E에 공사완성을 통지하면서 현장을 인도하였다.

3) 원고는 2019. 1. 22. E와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113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10. 18. "E는 원고에게 1,101,818,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23.부터 2019. 10. 18.까지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C는 E와 연대하여 위 1,101,818,082원 중 893,818,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23.부터 2019. 10. 18.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선고하여

C에 대하여 2019. 11. 6.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나. C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

1) C와 피고는 1993. 4. 24.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9. 7. 8. 협의이혼하였다.

2) C는 울산 중구 D 대 254.6m²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및 울산 중구 G 대 482.5m²(2019. 11. 18. H 도로 27.6m²가 분할되었다)에 관하여(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) 2018. 8. 3. 주식회사 I에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2019. 6. 4.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은 뒤 2019. 6. 7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C는 2019. 6. 4. J조합으로부터 15억 원과 5억 원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 및 G 토지에 대하여 2019. 6. 4. J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피고는 2020. 9. 29. J조합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2020. 9. 29. 19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계약인수를 하고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.

3) 한편, C는 2018. 4. 19.경 울산 중구 K 토지 60m²와 L호, M호, N호, O호, P호, Q호 건물(각각 13.69m²)을 피고에게 증여하고, 2018. 4. 19.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.

4) C와 피고는 2019. 5. 31. 이 사건 부동산 및 G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R, S, T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9. 11. 14.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9. 12. 13. 각 1/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 C는 2019. 12. 26. 위 건물 R, S, T동 전부에 대하여도 J조합에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, 위 근저당권도 피고가 2020. 9. 29. 채무자로 계약인수를 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.

다. 증여 당시 C의 재산상태

1) 적극재산

C 적극 재산	1	울산 중구 D 대 254.6m ²	899,756,4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
2	경주시 U 답 1,088m ²	198,016,0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	
3	경주시 V 답 1,110m ²	167,610,0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	

C 적극 재산	1	울산 중구 D 대 254.6m ²	899,756,4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
4	울산 중구 H 도로 27.6m ²	25,198,8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	
5	울산 중구 G 대 482.5m ²	1,535,797,5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	
6	울산 중구 K W동 철근콘크리트조 보이라실 173.59 m ²	67,424,0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	
7	울산 중구 K X호 철근콘크리트조 1030.12m ²	465,553,0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	
8	울산 중구 K Y호 철근콘크리트조 1041.09m ²	278,624,000	감정평가서	2019.06.07. 기준	
9	베라크루즈 승용차(2015.05.27.등록)	15,600,000	갑 13-1, 2	2019. 5. 5. 아들 Z에게 99% 지분 이전등록, 현재 C 지분 1%	
합계	3,653,579,700				

2) 소극재산

C 소극 재산	1	J조합 대출금	2,000,000,000	J조합 금융거래회신, 을 9호증	
2	AA조합 대출금			원고는 220,000,000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, 2019. 6. 7. 완제되었으므로 제외한다.	
3	근저당권자 AB 채무	725,013,698	AB 사실조회 회신	울산 중구 K 토지에 관한 2018.08.03.자 근저당권 채무	
4	근저당권자 AC, AD 채무 (채권최고액)	300,000,000	갑 4-1	울산 중구 K 토지에 관한 2018.08.13.자 근저당권 채무	
5	근저당권자 AE 채무 (채권최고액)	400,000,000	갑 11-1, 갑 12-1	울산 중구 G, H 토지에 관한 2019.06.04.자 근저당권 채무	
6	근저당권자 AF 채무 (채권최고액)	360,000,000	갑 11-1, 갑 12-1	울산 중구 G, H 토지에 관한 2019.06.04.자 근저당권	
7	전세권자 AG, AH, AI 채무(전세권설정 전세금)			이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이후인 2019. 12. 10. 설정된 것이므로 제외한다.	
8	원고에 대한 공사관련 보증채무	893,818,082	갑 1-1, 2 갑 7-1, 2		
9	AA조합 신용대출	40,000,000	AJ 조회서	(2014.09.22.)	
합계	4,718,831,780			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 내지 12, 15 내지 19호증(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

가지번호를 포함한다), 을 제5, 9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AK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주장

C가 피고에게 2019. 6. 7.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고만 한다)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, 피고는 원고가 2020. 3.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및 사해의사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1)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'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'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).

2) 을 제1,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C가 울산 중구 K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2019. 11.경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,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C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2020. 3. 12.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,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C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수가 많고 그 권리관계가 복잡한 점에 비추어 볼 때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0. 3.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가 2018. 6.경 완료되었고,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C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판결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판결금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,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).

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었으므로, 1)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한편,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감정인 AL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, C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및 G 토지 지상에 피고와 공동으로 근린생활시설 R, S, T동을 신축하여 변론종결일 무렵 C 1/2 지분에 대한 그 시가가 131,548,360원, 12,247,500원, 14,662,500원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, 관련된 전세금 채무 4억 원이 추가되었고,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이 2024. 1. 15. 기준으로 477,372,319원이 추가된 점, 경주시 U 및 V 토지가 2019. 6. 7. 매각되고 없는 점, 피고가 근저당권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,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그대로 제공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2019. 4.경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및 G 토지 지상에 건물을 공동 신축하기로 하면서 건물 준공을 받기 위하여 G 토지는 C 명의로 두고 2019. 6. 7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한바, 이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,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

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,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 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

따라 판단하되,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·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C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고 이 사건 증여 이후 얼마 안되어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, 반면에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되어 있고, 피고는 재산분할합의서나 재산분할의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, C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18. 6.경 이미 울산 중구 K 토지 60㎡와 L호, M호, N호, O호, P호, Q호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, ② 협의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신축된 건물은 공유하면서 그 건물 및 대지에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C의 채무 20여억 원을 피고가 모두 인수한다는 것이 통상적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증여가 정상적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

1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(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),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).

2)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양도된 부동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 금액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).

3) 이 사건 증여 이후 피고가 J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면서 C의 기존채무를 변제하고

피고가 1,980,000,000원을 대출받아 2020. 9. 29. 채무자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, 그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.

앞서 본 시가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,023,492,000원이고, J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의 공동담보로 들어가 있는 G 토지의 시가는 1,746,650,000원, H 토지의 시가는 28,676,400원이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면, 731,374,354원 $\{= 20\text{억 원} \times \{1,023,492,000\text{원} / (1,023,492,000\text{원} + 1,746,650,000\text{원} + 28,676,400\text{원})\}$ 이 된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, 이 사건 증여는 292,117,646원 $(= 1,023,492,000\text{원} - 731,374,354\text{원})$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범위 내에 있는 292,117,6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별도로 하고 있으나, 이는 가액배상액 산정시 그 기준시점을 달리 한 것에 불과하여 판단을 나누어 하지는 않는다)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권희

별지

1) 이 사건 부동산과 G 토지(분할되기 전 H 토지 포함)를 공동담보로 하여 J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, 그 채무액이 20억 원이었으므로, 위 각 부동산 가액별로 채무액을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무액은 731,285,512원 $\{= 20\text{억 원} \times 899,756,400\text{원} / (1,560,996,300\text{원} + 899,756,400\text{원})\}$ 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다.